

#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58
----------	-----

제출년월일 : 2000. 2.

제출자 : 안산시장

## □ 개정구분 : 전부개정

## □ 개정이유

- 날로 급변하는 행정수요 증가와 관련하여 99년 12월 30일자 기구·정원승인에 의거 관내 기업체에 대한 ONE-STOP-SERVICE 제공을 위한 기업지원센타 신설과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한 환경사업소 확대개편에 따라
- 시 본청 국조정, 담당관·과 재편제, 분장사무 조정등 행정조직 개편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용을 도모코자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함

## □ 주요골자

가. 기업지원센타 신설에 따른 본청 실·국의 재편제(안 제6조)

나. 경제통상국과 복지환경국의 지역경제과·실업대책팀·농어촌진흥과·사회여성과·위생과를 경제복지국으로 재편제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안 제8조)

다. 복지환경국의 공원녹지과·환경보호과를 건설국으로 조정하고 건설국을 환경건설국으로 명칭변경 및 분장사무 조정(안 제10조)

라. 관내 기업체에 대한 ONE-STOP-SERVICE 제공을 위한 기업지

### **원센타 신설(안 제18조 내지 제20조)**

- 본청의 기업지원과와 통상협력과를 통합하여 기업지원센타 4급소장 아래 3과(기업지원과·첨단산업과·기업민원과) 신설

**마. 하수행정업무의 일원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하수처리용량의 대폭증가에 따른 종전의 환경사업소 확대개편(안 제24조 내지 제26조)**

- 하수과와 환경사업소를 통합하여 환경사업소 4급소장 아래 2과(하수행정과·하수처리과) 신설

**바. 기업지원센타 신설, 환경사업소 확대개편에 따른 사업소 순위조정  
(안 제18조 내지 제26조)**

- 당초 : 상수도사업소→관산도서관→농수산물도매시장→청소사업소

- 변경 : 기업지원센타→상수도사업소→환경사업소→관산도서관

**개정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02조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 경기도 기획 13109-618('99. 12.30)호 공문

**사전예고사항 : 해당없음**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인 안산시 보건소, 안산시 대부보건지소, 안산시 대부남동보건진료소를 둔다.

② 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출장소인 안산시 대부출장소를 둔다.

③ 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업소인 안산시 기업지원센타, 안산시 상수도 사업소, 안산시 환경사업소, 안산시 관산도서관,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안산시 청소사업소, 안산시 여성복지회관, 안산시 교통종합민원실, 안산시 도시개발사업소,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안산시 농업기술보급소를 둔다.

④ 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하부행정기관인 일동, 사1동, 사2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부곡동, 월피동, 와동, 고잔1동, 고잔2동, 성포동, 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 초지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반월동, 대부동, 안산동을 둔다.

**제3조 (보조·보좌기관의 직급등)** 시 본청의 실장·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 기관의 장, 출장소의 장 및 사업소의 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과·담당관의 설치등)** 시 본청·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의 과·담당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직급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장 시 본청

**제5조 (부시장)** ① 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부시장을 둔다.

② 부시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통할하며, 시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 (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경제복지국, 도시계획국, 환경건설국, 행정지원국을 둔다.

**제7조 (기획실)** 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예산편성 및 중기지방재정 운영
3. 투·융자사업 및 주요 투자사업 심사, 분석
4. 조례·규칙의 심사 및 소송업무
5. 시행정의 감사 및 복무감찰
6.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
7.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8. 청소년 업무
9. 행정전산화 추진 및 전산개발·유지관리
10. 정보통신망 구축 및 통계정보 자료조사, 관리

**제8조 (경제복지국)** 경제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2.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3. 에너지 수급 및 안전대책
4. 전문건설업중 난방시공업, 가스시공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 및 관리
5. 실업에 관한 업무
6.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
7. 농업기반조성 및 공유수면 관리

## 16 (부록)

8. 농·수·축산 진흥에 관한 사항
9. 농·수·축산 유통에 관한 사항
10. 사회복지시설 업무
11. 생활보호(취로), 의료보호, 행려자 관련 업무
12. 장애인, 보훈단체 관련 업무
13. 노인, 여성, 아동복지 관련 업무
14.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사업 추진
15. 공중, 식품위생업소 관리
16. 매장, 표지에 관한 업무

제9조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토이용계획, 산업입지 및 도시개발 관련 업무
2.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비,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3. 토지구획정리 사업, 지역개발사업,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업무
4. 개발제한구역, 옥외광고물 관리
5. 주택, 건축허가 관리
6. 도시설계, 건축물 건축허가 관리
7. 토지이용 및 지적도 정리, 공시지가 산정
8.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 발급

제10조 (환경건설국) 환경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 및 오염관련 업무
2. 공원·녹지조성 및 관리업무
3.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 관리업무
4. 조경시설 및 양묘사업 추진
5. 도로사업의 종합계획수립, 조정 및 시행
6. 도로사업에 따른 토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
7. 전문건설업(난방시공업, 가스시공업,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제외) 등록 및 관리

8. 도로, 도로시설물,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 공사(토목, 건축)설계 및 시공감독
10. 기술심사 업무
11.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 업무

**제11조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 공인, 복무, 의전
2. 동 행정의 지도·감독, 행정구역관리, 선거 및 국민투표, 학교교육 지원
3. 공무원 인사, 공무원 교육훈련, 조직관리, 비정규인력관리, 주민자치센타 업무총괄
4.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5. 민방위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6. 민원, 호적, 병무에 관한 사항
7. 지방세정에 관한 사항
8. 지출, 계약, 국·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 제3장 직속기관

- 제12조 (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둔다.
- ②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안산시 보건소	안산시 고잔동 515번지	안산시 일원
안산시 대부보건지소	안산시 대부북동 467번지	대부동 일원
안산시 대부남동보건진료소	안산시 대부남동 1071-8번지	대부남동 일원

**제13조 (소장 등)** ①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보건소장은 시장,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 (소관사무)** ①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②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 제4장 출장소

**제15조 (설치)** ①법 제10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산시 대부출장소(이하 이 장에서 “출장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안산시 대부출장소	안산시 대부북동 467번지	대부동 일원

**제16조 (소장)** ①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출장소장이 대부동장을 겸한다.

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 (소관사무)** 출장소장은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및 대부동사무소 일반사무를 관장한다.

## 제5장 사업소

### 제1절 기업지원센타

**제18조 (설치)** ①관내 기업체의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하여 안산시 기업지원센타(이하 이

절에서 “기업지원센타”라 한다)를 둔다.

②기업지원센타는 안산시 원시동 773-2번지에 둔다.

**제19조 (소장)** ①기업지원센타에 소장을 둔다.

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 지원
2. 기업지원 육성
3.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4. 외자유치 및 수출진흥
5. 첨단산업 지원육성
6. 공단관련 각종 민원처리
7. 공단 건축민원 및 지방세 업무처리
8. 공단기반시설 관리
9. 기타 공단관련 기업지원 업무전반

## **제2절 상수도사업소**

**제21조 (설치)** ①상수도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서비스의 향상을 기하고 상수도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산시 상수도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②사업소는 안산시 고잔동 529-2번지에 둔다.

**제22조 (소장)** ①사업소에 소장을 둔다.

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상수도시설 확충 및 종합계획 수립 시행
2. 상수원관리 및 상수도 시설의 운영, 유지관리

3. 취·정수, 생활·공업용수의 생산 및 송·배급수 업무
4. 누수방지 및 노후관 교체
5. 수도요금, 시설분담금, 정액요금, 제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6. 시민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지하수 개발, 이용에 관한 업무
8. 간이상수도 및 먹는물 관련 업무
9. 기타 부담금 등 과정업무

### 제3절 환경사업소

**제24조 (설치)** ①하수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방류되는 오수 및 하수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안산시 환경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②사업소는 안산시 성곡동 621번지에 둔다.

**제25조 (소장)** ①사업소에 소장을 둔다.

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2. 하수처리장 건설·보수 및 유지관리
3. 하천관리 및 공공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4. 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
5. 방류수의 수질관리 및 실험실 운영
6. 하수처리 방법의 연구개발
7. 기타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

### 제4절 관산도서관

**제27조 (설치)** 시민의 학술연구와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산시 관산도서관(이하 이 절에서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28조 (명칭)** 도서관의 구분, 명칭,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명 칭	소 재 지
본 관	안산시 관산도서관	안산시 원곡동 산 31번지
분 관	안산시 관산도서관 성포분관	안산시 성포동 산 47-1번지
분 관	안산시 관산도서관 감골분관	안산시 사동 산 83-8번지

**제29조 (관장)** ①도서관에 관장을 둔다.

②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도서자료의 선정구입, 수집정리 및 보관
2. 도서관 자료의 보관 및 열람
3. 도서관 및 독서시설의 유지관리
4. 독서권장사업 및 강연회, 전시회, 각종 문학강좌등 문화활동 추진
5. 기타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제31조 (설치)** ①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하 이 절에서 "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②사무소는 안산시 이동 528번지에 둔다.

**제32조 (소장)** ①사무소에 소장을 둔다.

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시설물 관리
2.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3.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지도·감독

#### 4. 기타 도매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제6절 청소사업소

제34조 (설치) ①안산시 폐기물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 청소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②사업소는 안산시 고잔동 515번지에 둔다.

제35조 (소장) ①사업소에 소장을 둔다.

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6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 폐기물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시행
-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허가·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 환경미화원 관리 및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관한 사항

### 제7절 여성복지회관

제37조 (설치) 여성의 복지증진과 저소득층 및 일반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근로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안산시 여성복지회관(이하 이 절에서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38조 (명칭) 복지회관의 구분, 명칭,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명 칭	소 재 지
본 관	안산시여성복지회관	안산시 고잔동 525번지
분 관	안산시여성복지회관 분관	안산시 원곡동 643-7번지

제39조 (관장) ①복지회관에 관장을 둔다.

②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0조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경제적 자립기반을 위한 기술교육
2. 건전한 정서문화 함양을 위한 취미교육
3. 여성의 사회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4. 신상 및 생활고충상담
5. 근로청소년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교육
6. 근로청소년 복지시설 및 취미교육 운영
7. 기타 여성 및 근로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제8절 교통종합민원실**

**제41조 (설치)** ①차량등록업무를 포함한 교통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 교통종합민원실(이하 이 절에서 “교통종합민원실”이라 한다)을 둔다.

②교통종합민원실은 안산시 선부동 1070-10번지에 둔다.

**제42조 (실장)** ①교통종합민원실에 실장을 둔다.

②실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3조 (소관사무)** 실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교통기획일반 및 교통영향평가, 교통유발부담금부과, 교통량조사
2. 자동차운수업·관리업의 인·허가 및 지도감독
3. 주차장설치·관리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4. 교통질서계도 및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5.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관리
6. 자동차 및 건설기계 책임보험·저당권에 관한 업무
7. 기타 교통행정 및 차량민원에 관한 사항

### **제9절 도시개발사업소**

**제44조 (설치) ①**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도시개발사업소

(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②사업소는 안산시 고잔동 531-1번지에 둔다.

**제45조 (소장) ①**사업소에 소장을 둔다.

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6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공영아파트 건립 사업
2. 공유수면 매립사업
3. 택지개발사업
4. 공공용지 조성사업
5. 공영개발(경영수익)사업

#### **제10절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제47조 (설치) ①**제24회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그날의 영광을 전승기념하기 위하

여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하 이 절에서 “국민생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국민생활관은 안산시 고잔동 604번지에 둔다.

**제48조 (관장) ①**국민생활관에 관장을 둔다.

②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9조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시민의 문화생활, 체육진흥사업
2. 시민의 정서함양, 교양강좌 등 건전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
3.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체육, 문화활동 지원
4. 경기시설 및 문화시설의 사용허가 및 입장권 판매
5. 올림픽 영광 전승사업
6. 기타 국민생활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제11절 농업기술보급소

- 제50조 (설치) ①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첨단농업기술 보급을 통한 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안산시 농업기술보급소(이하 이 절에서 “보급소”라 한다)를 둔다.  
②보급소는 안산시 고잔동 515번지에 둔다.

제51조 (소장) ①보급소에 소장을 둔다.

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2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발전계획 수립과 시행
2. 식량증산 시책과 영농자재 공급
3.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4. 토양검정 및 보호
5.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과 보급

## 제6장 동

- 제53조 (설치) ①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의 사무소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54조 (동장) ①동에 동장을 둔다.

②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5조 (소관사무) 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경제통상국장"을 "기업지원센타소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중 "외자유치팀장"을 "통상협력팀장"으로 한다.

②안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중 "유통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며, 제10조제3항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③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하고, 제16조제3항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하며, 제16조제4항중 "건설국장"을 "환경건설국장"으로 한다.

④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사회경제국장"을 "기업지원센타소장"으로 하고, 제20조제1항제1호중 "경제통상국장"을 "기업지원센타소장"으로 한다.

⑤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경제통상국장"을 "기업지원센타소장"으로 하고, 제7조제6항중 "기업지원과장"을 "첨단산업과장"으로 한다.

⑥안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복지환경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1호중 "복지환경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⑦안산시여성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복지환경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⑧안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복지환경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⑨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중 "복지환경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하고, 제14조제1항제1호중 "복지환경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⑩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복지환경국장"을 "환경건설국장"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제1호중 "복지환경

국장”을 “환경건설국장”으로 한다.

⑪ 안산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환경건설국장”으로 한다.

⑫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제2호 중 “공보팀장”을 “자치홍보담당관”으로 한다.

⑬ 안산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

⑭ 안산시 도서 관리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중 “관리업무 담당주사”를 “운영업무 담당주사”로 한다.